

『구미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강승수 의원 외 7명

2. 제안이유

- 범죄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해 경로당의 CCTV 설치와 보수를 지원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약자 보호에 기여하고, 등록 노인수 당 연면적 상한 기준을 높여 이용자가 과밀한 곳은 더 넓게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을 현실화 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시설기준 개정(안 제3조)
- 지원기준 개정(안 제6조)
- 관련규칙 명칭변경(안 제16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노인복지법」 제36조, 제37조, 제47조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붙임)
- 기 타 : 조례안 예고(2021.4.21.~4.28.)결과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경로당의 범죄 예방 차원에서 CCTV 설치·보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, 연면적 상한 기준과 신축·재건축 지원기준 금액을 상향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

- 경로당 연면적 기준 상향은 이용자를 위한 편리한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며, 신축·재건축 지원 금액을 상향하여 자재비, 인건비를 포함한 건축 비용 및 기존건물 철거 비용 등 각종 비용 상승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- 아울러,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설치로 어르신 보호 및 안전 확보에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됨.